

[별표 2의2] <개정 1998.12.31, 1999.3.31, 2000.4.18>

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기 준 및 지 급 액	
	지 급 기 준	지 급 액
·일반직공무원중 3급(과장급)이하 ·외무공무원중 3급(과장급) 이하 ·별정직공무원중 3급상당(과장급)이하 ·경찰공무원(총경이하) ·소방공무원(소방감이하) ·연구직공무원(3급과장상당 직위이하) ·지도직공무원(3급과장상당 직위이하) ·기능직공무원 ·고용직공무원 ·교육공무원[별표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(장학관·교육연구관·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한다)중 3급과장상당 직위 보직자이하] ·군인(중령이하) ·군무원(3급과장급이하) ·국가정보원직원중 3급(과장급)이하	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순위가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	별표2의3의 성과상여금기준호봉표에 의한 월봉금액(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의 200퍼센트 해당 금액
	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순위가 상위10퍼센트초과 2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	월봉금액의 100퍼센트 해당 금액
	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순위가 상위 25퍼센트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	월봉금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

비고 :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